	보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_	
람	



제 1254 호 2020. 9. 17.(목)

고	시	
○ 울산광	역시 북구 :] 제2020-159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 울산광	역시 북구 :] 제2020-162호[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2
공	고	
○ 울산광	역시 북구	1 제 $2020 ext{-}1047$ 호[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cdots ext{-}$ 4
○ 울산광	역시 북구	2 제2020-1048호[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3
() 울산광	역시 북구	2 제2020-1055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15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곳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0. 9. 8.
-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데크, 팔각정자 설치)
- 3. 젂용・사용의 장소 : 연암동 159-2번지
-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142.7m²(시설물:63.3m², 식재79.4m²)

나. 기 간

- 영구 : 2020. 9. 8. ~ 2049.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공원녹지과)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62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9. 1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의회 의결일자 : 2020. 9. 15.
-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액 구성비		71.71.01			
	구 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01,309,194	100.00%	426,540,844	100.00%	74,768,350	17.53%
일	반회계	497,540,084	99.25%	422,739,169	99.11%	74,800,915	17.69%
■	별회계	3,769,110	0.75%	3,801,675	0.89%	△32,565	△0.86%
5	 타특별회계	3,769,110	0.75%	3,801,675	0.89%	△32,565	△0.8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13,362	0.04%	187,362	0.04%	26,000	13.8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7,643	0.02%	77,643	0.02%	0	0.00%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754	0.00%	1,754	0.00%	0	0.00%
	주차장특별회계	3,476,351	0.69%	3,534,916	0.83%	△58,565	△1.66%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장 • 관	에사에		기저애			
0 · E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미파우김	증감률
총 계	497,540,084	100.00 %	422,739,169	100.00 %	74,800,915	17.69%
100 지방세수입	78,037,000	15.68 %	75,637,000	17.89 %	2,400,000	3.17%
110 지방세	78,037,000	15.68 %	75,637,000	17.89 %	2,400,000	3.17%
200 세외수입	25,173,349	5.06 %	25,302,642	5.99 %	△129,293	△0.51%
210 경상적세외수입	17,298,222	3.48 %	17,561,789	4.15 %	△263,567	△1.50%
220 임시적세외수입	7,875,127	1.58 %	7,740,853	1.83 %	134,274	1.73%
300 지방교부세	12,837,000	2.58 %	12,296,000	2.91 %	541,000	4.40%
310 지방교부세	12,837,000	2.58 %	12,296,000	2.91 %	541,000	4.40%
400 조정교부금등	50,770,720	10.20 %	50,770,720	12.01 %	0	0.00%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0,770,720	10.20 %	50,770,720	12.01 %	0	0.00%
500 보조금	309,049,439	62.12 %	237,440,478	56.17 %	71,608,961	30.16%
510 국고보조금등	220,724,454	44.36 %	158,755,563	37.55 %	61,968,891	39.03%
520 시・도비보조금등	88,324,985	17.75 %	78,684,915	18.61 %	9,640,070	12.25%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672,576	4.36 %	21,292,329	5.04 %	380,247	1.79%
710 보전수입등	20,714,060	4.16 %	20,672,373	4.89 %	41,687	0.20%
720 내부거래	958,516	0.19 %	619,956	0.15 %	338,560	54.61%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u> </u>	- 11 • 12 12)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TSU		TSU		<u> </u>
	총 계	497,540,084	100.00 %	422,739,169	100.00 %	74,800,915	17.69 %
010	일반공공행정	18,716,145	3.76 %	18,420,966	4.36 %	295,179	1.60 %
020	공공질서및안전	3,259,473	0.66 %	3,269,225	0.77 %	△9,752	△0.30 %
050	교육	3,512,565	0.71 %	3,342,665	0.79 %	169,900	5.08 %
060	문화및관광	28,988,971	5.83 %	29,642,082	7.01 %	△653,111	△2.20 %
070	환경	11,734,970	2.36 %	11,672,404	2.76 %	62,566	0.54 %
080	사회복지	287,262,282	57.74 %	221, 194, 347	52.32 %	66,067,935	29.87 %
090	보건	10,554,420	2.12 %	9,925,293	2.35 %	629, 127	6.34 %
100	농림해양수산	27,654,974	5.56 %	26, 151, 168	6.19 %	1,503,806	5.75 %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036,558	1.01 %	4,242,408	1.00 %	794, 150	18.72 %
120	교통및물류	17,326,252	3.48 %	13,489,986	3.19 %	3,836,266	28.44 %
140	국토및지역개발	23,822,353	4.79 %	23,166,604	5.48 %	655,749	2.83 %
160	예비비	2,907,066	0.58 %	2,608,310	0.62 %	298,756	11.45 %
900	기타	56,764,055	11.41 %	55,613,711	13.16 %	1,150,344	2.0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0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제2항 개정(2017. 12. 29.)에 따라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명시하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정하여 정책실명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정책의 실명 관리 및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3조, 제4조)
-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안 제5조)
-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안 제6조부터 제10조)
- 마.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안 제11조)

바. 정책 이력관리 및 사업평가, 포상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고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우)44248

○ 전화번호 : 052-241-7154

○ 팩스번호 : 052-241-7109

o E-mail: ssunmi0825@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그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	주 소					
개인정보취급		제 15조 1항(개인정 를 제공할 것을 동	성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 의견을 제출하고		운영 조례」제정안의	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2020년 9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약	ᅾ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주요 정책을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책실명제"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2.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이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한다. 이 경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실·국장으로 한다.
 -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 주요 현안 사업
 -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4.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 5.「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한다.
 -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1. 당연직 위원 : 국별 주무부서의 장
 - 2. 위촉직 위원 :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내역서를 취합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 제12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적기에 공개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평가·점검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담당 부서의 장은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 칭 기재	'00.00.00	○○○실장 ○○○과장 ○○○사무관	
○ 내용	'00.00.00	○○○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기재항목>

-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 ⑤ 담 당 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⑥ 선정기준 : 주요현안 / 10억 이상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 구민신청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中 택 1
- ①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	② 정책사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0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 개정(2017. 12. 29.)으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폐지

3. 폐지 규칙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고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우)44248

○ 전화번호 : 052-241-7154

○ 팩스번호 : 052-241-7109

o E-mail: ssunmi0825@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울산광역시 북구	-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9 P.C. 7 11 27 1	주 소			
개인정보취급		제 15조 1항(개인경 를 제공할 것을 동	성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북구 정책실명제 출하고자 합니다.		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2020년 9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약	^{ᅾ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보

공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10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체결 시 협약내용 공증 의무화 규정으로 인 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사 무위탁 협약내용의 공증 의무화 규정 삭제

2. 개정내용

○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내용 공증 의무화 규정 삭제(안 제8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공증인법」제2조(공증인의 직무), 제57조(인증 방법)
- 「민사소송법」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제 출 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우 44248)
 -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6.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 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 다.

-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체결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	제8조(협약체결 등) ①
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u>체결하여야</u>	<u>체결하여야</u>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u>한다.</u>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보

공

④ 생략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 ②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 ③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 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제 출

	찬성	여부				
조례안 내용	찬성	반대	의	의 견	비고	